



대구대학교 · 대구지방교정청 학 관 교 류 협 약 서



대구대학교와 대구지방교정청(이하 '양 기관'이라 함)은 안전한 사회, 국민 행복의 국정기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교정실무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수용자 교육을 위한 상호교류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,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·관 협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협약은 양 기관이 교정실무와 관련한 학문적 분야와 수용자 인성교육 관련 강좌개설 등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바탕으로 국민행복을 선도함과 동시에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내용)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1. 연구 및 교육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·정보·시설·인력 등의 포괄적인 교류에 관해 다음 사항을 협력한다.
 - 가. 학·관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연구·개발 및 학술교류
 - 나.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의 상호 협조
 - 다. 각종 논문집 및 중요 교정통계 자료 등 정보 교환
 - 라. 교정업무에 관한 토론 및 교환 강의
 - 마. 기타 상호 요청에 의해 기관장 등 특강 실시
2. 양 기관의 교육지원에 적극 협력한다.
 - 가. 교정공무원 및 재학생에 대한 직무교육 등 상호 지원
 - 직무 및 교양 관련 강의 지원
 - 교정공무원의 재교육 및 재학생 현장학습 지원
 - 나. 수용자 인성함양을 위한 강의 지원
 - 교정시설 내 수용자 대상 인성함양 관련 강의 지원
 - 다. 대학생들에 대한 실무교육 등 지원
 - 교정업무 관련 교육, 홍보자료 등 지원
 - 관내 교도소 참관 등 체험수업 협력
3. 기타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력한다.

제3조 (방법) 본 협약은 상호 신의·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며,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4조 (비용부담) 이 협약에 의해 취해진 조치로 특별히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그 비용은 의뢰한 측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 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6조 (효력)

1. 본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협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변경·해지 할 수 있다.
2. 본 협약은 대구대학교 총장과 대구지방교정청 청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본 내용의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9월 6일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홍덕률

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

대구지방교정청
DAEGU REGIONAL CORRECTIONS HEADQUARTERS

청장 임재표

대구시 달서구 화암로 301